

Hana 1Q bank CMS^{SERP} 이용약관

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함)과 웹케이(주)가 제공하는 Hana 1Q bank CMS^{SERP} 소프트웨어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1. 용어의 정의

- ① " Hana 1Q bank CMS^{SERP} 소프트웨어"란 은행 및 웹케이(주)에서 제공하는 금융연동 업무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.
- ② "이용자"란 Hana 1Q bank CMS^{SERP}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을 말합니다.

2. 이용약관의 변경

- ① 은행 및 "웹케이(주)"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 및 "웹케이(주)"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통지하고 동시에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, 그 밖의 경우에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야 합니다.
- ③ 은행 및 "웹케이(주)"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"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은행 및 "웹케이(주)"는 이용자가 제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3. 서비스 사용제한 및 기타권리제한

- ① 본 서비스를 두 대 이상의 PC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인증정보를 통해 온라인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, 오프라인 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제외 기능: 금융관리, 대금수납, 대금지급 외 통제가 필요한 기능
- ② 이용자는 사용하는 서비스를 타인에게 임대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4. 저작권

본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웹케이(주) 소유입니다. 본 이용약관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는 한, 이용자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.

5. 이용/접속제한/계약종료

- ① 이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후부터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서비스의 월정사용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본 서비스의 접속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이용자가 서면으로 본 서비스 이용의 해지의사 표시를 한 때에 본 서비스 이용계약은 종료됩니다.
- ④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했던 프로그램은 삭제하여야 하며 CD는 은행에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.

6. 구입비(설치비) 및 사용료

- ① 본 서비스에 대한 구입비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은행의 가격기준정책에 따릅니다.
- ② 이용자는 구입비의 경우 이용신청시 현금으로, 월정사용료의 경우 가입신청일 익월부터 매월 5일에 납부합니다.
- ③ 수수료 출금일 이후에 매 영업일 또는 별도로 정한 출금일에 미결제 금액을 제 ② 항의 방법에 따라 출금,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
- ④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종료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징수합니다.

7. 기타조항

- ① 본 서비스를 설치하여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S/W상의 결함은 웹케이(주)에 책임이 있습니다.
- ②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기로 하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